

당신 자신에게 관대하라

Be gentle with yourself

송미옥 번역 (본회 이사)

당신의 삶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고
행복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당신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만일 떠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이 슬프고 비통할 때
당신 자신에게 관대해 지십시오.

당신 '안녕'이라고 말 할 때
당신의 두 눈에 울 권리를 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관대해 지십시오.

어느 날 하늘이 밝아지고
당신의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태양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
 빛날 것이며
한 친구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유를 가지세요.
단지 슬퍼할 권리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소망하기 시작하세요.
자신에 대해 관대해 지세요.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연·재·순·서

1. 생명윤리의 4대원칙
 -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 2) 악행 금지의 원칙
 - 3) 선행의 원칙
 - 4) 정의의 원칙
2. 환자 권리와 호스피스
3. 안락사와 호스피스

윤리란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며, 비윤리라 함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칭한다.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정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고 자라온 배경이 있기에 윤리적이나 비윤리적이나의 기준이 때로 모호할 수가 있다고 본다.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변하지 않는 윤리적 기준이 있다고 믿기에 다분히 절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절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선악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신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모색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생각된다.

1. 생명윤리의 4대원칙

생명윤리분야에서 그나마 지금까지 가장 널

리 공인받고 있는 생명윤리의 4대원칙은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 둘째, 악행금지 원칙, 셋째, 선행의 원칙이며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칙을 들 수 있다.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 역시 자유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료 행위 역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정신, 이것이 곧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환자의 자율적 의사(意思)에 따라 진료 행위를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면 우선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즉, 의사는 진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인데, 의사는 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반면 환자는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의 동의가 진정한 동의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생명의료윤리학(Bio~Medical Ethics)에서는 이를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한다. 윤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한 행위나 동의는 도덕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동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의사는 언제나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여기서 일차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의 윤리적 물음이 발생한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환자의 질병 치료에 오히려 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사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안다고 해서 환자의 결정이 모두 윤리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신병자의 의사(意思)는 존중받기 힘들다. 그러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 불만한 문제이다.

나아가 자신의 자율적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서 우리는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그러면 대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1997년 12월 서울 B병원에서 중태인 50대 환자가 뇌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명할 수 없어 그 부인이 (진료비 때문에) 퇴원하겠다고 때를 써 퇴원했다. 그 후 환자의 부인과 퇴원을 허락한 의사들은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여기서 검찰은 부인을 대리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이처럼 대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물음이 문제가 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위약(Placebo)의 윤리성 문제이다. 즉,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약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설령 자율성을 침해한다 할지라도 허용될 수 있다면, 그 정당근거는 무엇인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위에서 제기한 물음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날마다 부딪치는 문제들이다. 하

지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항상 준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살펴보게 될 악행금지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또한 의료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악행금지의 원칙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히포크라테스 선언에는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를 우리는 악행금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언뜻 보면 의사가 환자에게 해악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좀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처음 보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개념적으로 '악행'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정신적 해악이나 재산상의 손실 등도 악행에 속하지만 생명·의료윤리학에서는 신체적 악행이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악행이 무엇인지 밝혀져도, 우리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장이식 수술의 경우 우리는 기증자로부터 신장 하나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신장 제거는 분명 기증자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다른 환자를 살리는 데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악행이 허용되며, 어떤 조건 하에서 악행이 허용되는가의 물음을 묻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자료제공 : 편집부)

NEWS

회원소식

겨자씨교회호스피스

호스피스 봉사자 모임

- 일시 : 10월 31일(목)
- 장소 : 조선간호대학 내
- 대상 : 겨자씨교회호스피스 자원봉사자
- 문의 : 062)231-7367

우리호스피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가을 나들이

- 일시 : 11월 4일(월)
- 장소 : 축령산
- 대상 : 우리호스피스 봉사자 누구나
- 문의 : 031)828-5147, 016-295-2641

평안호스피스

호스피스 헌신의 밤

- 일시 : 12월 1일(주일) 오후 7시
- 장소 : 새중앙교회 대예배실
- 문의 : 031)467-9259

세브란스호스피스

1. 유가족 추모모임

- 일시 : 11월 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치과병원 7층 강당

2. 봉사자 총회 안내

- 일시 : 11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재활병원 강당

3. 호스피스 증례발표

- 일시 : 11월 27일(수) 오후 6시
- 장소 : 안이병원 청파호성춘 회의실
- 전화 : 02)361-7653

전북지부 소식

제1기 순창군사회복지대학

(호스피스 자원봉사원 양성교육)

- 일시 : 11월 12일~12월 3일 (주2회, 월·화 실시)
- 장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교육실
- 주최 :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 후원 : 한국호스피스협회전북지부, 순창군, 전라북도공동모금회
- 대상 :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순창군민